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24일, 권향엽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0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18.)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26.) 상정,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상정,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향엽 의원)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도 투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

다.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제12장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01.)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범수)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 사례와 같이 국민투표의 투표시간을 현행보다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위성곤의원).

- 헌법 제130조제2항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현재 확인 가능한 투표권자의 범위인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윤건영의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